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6

제 출 일 : 2026. 10. 21.
제 출 자 : 남양주시장

1. 제안이유

○ 건축위원회 위원회의 성별 구성 비율을 명확히 하여 위원 위촉 과정에서 여성 건축 전문가 발굴 및 위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촉진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등과 관련한 건축사 현장 조사·검사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 기준을 현실화 되도록 개선하여, 건축사 업무 대행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건축물의 완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관계법령

○ 「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
○ 「건축법」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 「건축법 시행령」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3. 주요내용

○ 건축위원회의 성별 구성 비율 명확화(안 제4조제5항)
○ 업무대행 빈도가 밀집된 소규모 건축물의 연면적을 세분화하고 검사 대행 소요시간을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안 제21조제2항 별표 2)

4. 참고사항

○ 부서협의 결과

1) 협의기간 : 2026. 8. 5. ~ 2026. 8. 14.

2) 협의결과

- 비용추계(예산과)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 성별영향평가(여성아동과) : 개선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 원안동의
- 규제심사(의회법무과) : 규제심사 대상 아님

○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6. 8. 25. ~ 2026. 9. 14.(20일간)
- 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 제520회 조례·규칙심의회

- 일　　시 : 2026. 9. 23.(수)
- 심의결과 : 원안가결

남양주시 조례 제 호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를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으로 하고,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건축신고·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관 관·과		도시국
입안자	관·과장 직위·성명	건축과장 정 보 영
	팀장 직위·성명	건축행정팀장 김 성 진
	담 당 자 성명·전화	윤 석 민 (031-590-399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 및 임기 등) ① ~ ④ (생 략)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촉된 위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구성 및 임기 등) ① ~ ④ (생 략) ⑤ ----------,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
제21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생 략) ② 시장은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기술사의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별표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제21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 별표 2----------

1. ~ 4. (생 략)

③ (생 략)

■ 남양주시 건축 조례 [별표 2]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수수료(제21조관련)

검사대행 건축물 연면적	검사대행 소요시간
660제곱미터 미만	4시간
66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	6시간
2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8시간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위 표에서 정하는 검사대행 소요시간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기술사의 시간당 노임단가의 8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천원 미만은 버림)으로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남양주시 건축 조례 [별표 2]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수수료(제21조관련)

검사대행 건축물 연면적	검사대행 소요시간
200제곱미터 미만	4시간
200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8시간

---------산업통상부장관---------

----------.

【별표 2】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수수료(제21조관련)

검사대행 건축물 연면적	검사대행 소요시간
200제곱미터 미만	4시간
200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8시간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12시간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6시간
3만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	20시간
5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24시간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28시간
30만제곱미터 이상	32시간

※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위 표에서 정하는 검사대행 소요시간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기술사의 시간당 노임단가의 8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천원 미만은 버림)으로 한다.

붙임1 **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

나. 재정 수반 요인

○ 제21조제2항제2호[별표2]

2. 미 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 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 2025년 전체 건수 기준으로 조례 개정시 소요 예산이 약 50% (63,216천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예산액 범위에서 집행가능함

* 2025년 기준 건축물 현장조사·검사 및 업무대행 수수료 비용 추계

(단위 : 건수 / 천원)

구 분	사용승인	건축허가 등	합계	비고
기 존	384건/ 107,652	383건/ 18,392	126,044	증63,216 (증50.15%)
변 경	384건/ 163,652	383건/ 25,608	189,260	

* 건축물 현장조사·검사 및 업무대행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액	350,000	24,5000	200,000	200,000
집행액	156,168	121,220	126,044	

4. 작성자

도시국 건축과장 정보영

붙임2 성별영향평가 결과

남양주

남 양 주 시

수신 건축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2026A경기남양044)

1. 건축과-29133(2026.8.13.)호와 관련됩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남양주시 건축 조례」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 (2026A경기남양044) 1부. 끝.

여성아동과장 [illegible].

주무관	박미연	여성정책담당	대결 2026. 8. 14. 홍주희

협조자

시행 여성아동과-24302 (2026. 8. 14.) 접수 건축과-29322 (2026. 8. 14.)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별관 4층 (금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3965 팩스번호 031-590-2269 / ibicf726@korea.kr / 비공개(5)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6A경기남양044			
정 책 명	**남양주시 건축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부서명	건축과		
	담당자명	김원호	전화번호	031-590-436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6년 8월 1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건축과)	○ 건축위원회 위원회 성별 구성 비율의 명확화를 통해 위원 위촉 과정에서 여성 건축전문가 발굴 및 참여를 실질적으로 촉진코자 함. ○ 건축물 사용승인 등과 관련한 건축사 현장 조사·검사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 기준을 현실화 되도록 개선함으로써 건축사 업무 대행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건축물 완성도 상향을 도모코자 함.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남양주시 건축 조례'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08월 14일

남양주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박미연/031-590-3965)

건축과장 귀하

붙임3 부패영향평가 결과

남 양 주 시

수신 건축과장
(경유)
제목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2026-43)[남양주시 건축 조례]

건축과-29063(2026. 8. 13)호와 관련하여 「남양주시 건축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 주요평가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관련 권고사항 반영 여부
○ 평 가 결 과 : 원안동의

붙임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감 사 관 직무대리 박호영

주무관 송호림	청렴윤리팀장 이정주	감사팀장	대결 2026. 8. 14. 박호영

협조자

시행 감사관-8272 (2026. 8. 14.) 접수 건축과-29274 (2026. 8. 14.)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신관 3층 감사관 (금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4719 팩스번호 031-590-2079 / rims@korea.kr / 비공개(6)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 리 번 호	2026-남양주-43		
자치법규명	남양주시 건축 조례		
평 가 담 당 부 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송호림
입 안 부 서	건축과	입안담당자 직급 및 성명	시설7급 김원호
평 가 결 과 통 지 일	2026. 8. 14.		
통 보 내 역	**원 안 동 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2026년 8월 14일

부패영향평가 평가담당 감사관

(담당자 / 연락처 : 송호림 / 031-590-4719)

건축과장 귀하

붙임4 규제심사 결과

남 양 주 시

수신 건축과장
(경유)
제목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남양주시 건축 조례」(변경)

1. 건축과-29064(2026. 8. 13.)호와 관련됩니다.

2.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변경)에 대한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 해당 개정안은 중앙부처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 및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3.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남양주시 행정규제합리화 조례」에 따른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규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끝.

의 회 법 무 과 장

주무관 김빛나 규제개혁팀장 안재현 의회법무과장 2026. 8. 13. 이봉규

협조자

시행 의회법무과-9772 (2026. 8. 13.) 접수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690-7920 팩스번호 031-690-2900 / q0249@korea.kr / 비공개(6)

붙임5 입법예고 결과

남 양 주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보고

1. 건축과-30172(2026. 8. 24.)호와 관련입니다.
2. 「남양주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입법 취지를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조 례 안 :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8. 25.(화) ~ 9. 14.(월) /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발행,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입법예고 결과 : 의견제출 없음
마. 행정사항
- 조례·규칙심의회(2026. 9. 23.) 심의 안건 제출

붙 임 입법 예고문 1부. 끝.

주무관	윤석민	건축행정팀장	김성진	건축과장	정보영	도시국장	전결 2026. 9. 15. 임선영

협조자 의회법무팀장 김상협 의회법무과장 이봉규

시행 건축과-33484 접수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2층 건축과 (금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3993 팩스번호 031-590-2399 / yem0828@korea.kr / 대국민 공개

- 시민주권시대 함께 지키는 개인정보 -